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김환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물품관리조례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 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물품관리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으로 조정(안 제9조, 제27조)
- 다. 주요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시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라. 물품의 망실·훼손 발생시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2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1) 항 표시(①, ② --)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쓰기로 함.
- 2) “제○조의 규정에 의한/의하여”를 “제○조의 규정에 따른/따라”로 함.
- 3) 그 밖에 일본식 표현(~에 대하여는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조례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물품운용관의 지정(안 제2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개정(안 제9조, 안 제27조)

- ▶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 물품 기부 또는 기증시 기증품 취득절차 규정(안 제11조)

- ▶ 물품의 기부 또는 기증시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함.

○ 물품의 망실·훼손 처리절차의 구체화(안 제22조)

- ▶ 물품의 망실·훼손 발생시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금번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조례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